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 명시 및 사무국 설치 등〉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81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 명시 및 지원근거 신설	2
2.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국 지원 근거 신설	4
3. 기금 설치목적에 공익적 기능 추가 및 정부의 출연 의무 신설	9
※ 참고자료	
1. 관련사업 및 추진 현황	13
2. 타부처 및 협회 등 의견	14
3.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개요	15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수현의원 등 11인

나. 제 출 일 : 2025. 5. 22.

다. 회부연월일 : 2025. 5.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신문’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신문은 지역문화의 보존 및 계승,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집행조직인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한 때 250억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현재 약 80억 원으로 1/5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한 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사무국의 설치·운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 명시 및 지원근거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지역신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 강화를 명시하고, 공익적 역할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안 제1조, 제4조제3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u>이바지함을</u>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이바지하고, 지역문화의 보존과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함을</u>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지역문화 보존 및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역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11조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제상·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¹⁾.
- 그런데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보존 및 계승,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익적 역할 및 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지역신문이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상 목적에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국 지원 근거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용도에 사무국의 설치·운영 지원을 포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u>제11조의2(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5조(기금의 용도) ----- -----. 1. ~ 4. (현행과 같음) <u>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지원</u> <u>6. (현행 제5호와 같음)</u>

다. 검토사항

- 현행 「지역신문법」 제7조²⁾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동법 제6조³⁾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개별 사무국 설치방식이 아닌, 동시행령 제10조⁴⁾ 및 제17조⁵⁾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 그런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집행조직인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 제11조의2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 설치하여 위원회 업무 보좌와 실무지원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이하생략)

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이하생략)

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래와 같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6)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무국 등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6조7)에 따라,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인 경우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인 지역신문 관련 업무를 그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법 제1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언론진흥재단에서 기금 관리·운용 등 사실상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사무국 신설은 신중 검토 필요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통해 위원회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해당 자문위원회등의 기능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를 말한다.

공감하나, 자문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지역언론팀)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기금 관리·운용 등 사실상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사무국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행정안전부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자문위원회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무국의 설치 여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⁸⁾ 및 제19조⁹⁾에

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기획조정실은 제외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되,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실 또는 국 밑에는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 및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④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과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을 두는 경우 실 밑에는 국 또는 과, 국 밑에는 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 밑에 두는 국에는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

따라 소관업무의 양이나 성질의 개별·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동시행령 제4조¹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현행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언론진흥재단에서 위원회를 보좌하고 있으며 기존 인력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 사무국 설치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언론진흥기금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도 별도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 사무국 신설 시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언론진흥재단 조직 이관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현행 기금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 사업과 연관성, 지역언론팀 및 지역지사 등 재단의 인적자원 활용

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들을 수 없다.

③자문기관을 제외한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부속기관 중 시험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기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직제 등)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을 통한 효율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반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시 동법 제9조¹¹⁾ 개정을 병행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직무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하고, 사무국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전제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기금 설치목적에 공익적 기능 추가 및 정부의 출연 의무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기금 설치목적에 공익적 기능 활성화 명시 및 정부의 출연 의무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1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2.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제조사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역신문의 <u>발전과 지원을</u>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 <u>발전·지원과 공익적 기능 활성화를</u> -----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 검토사항

- 현재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보존 및 계승,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목적에 공익적 기능 활성화와 관련된 역할이 명시되지 않음.
- 또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05년 205억 규모에서 2025년 83억 규모로 축소되어 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공익적 기능 활성화를 명시하고, 각 회계연도마다 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을 명시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문체부는 기금 설치 목적에 공익적 기능 활성화 추가는 수용하나 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의무조항 신설의 경우, 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을 매년 의무화한 사례가 없고. 「국가재정법」 제13조¹²⁾에 따라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언론진흥기금 전입금을 편성¹³⁾하여 안정적인 수입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 전출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재정지원으로, 별도 조항 신설을 통한 정부의 기금 출연 명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2)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이하생략)

13) 2024년 85억, 2025년 58억

- 반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재원조성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정부 출연 규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보다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1

관련사업 및 추진 현황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출 사업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3년	8,813 (사업비 8,251+ 기금관리비 562)	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지원 8,251 ·우선지원대상사(지역 일주간지) 82개 선정·지원 - 지역신문역량지원(기획취재지원 73사, 지역신문 제안사업 35사, 지역민참여보도 63사, 지역인재 인턴프로그램 45사, 디지털취재장비임대지원 82사 등) - 지역공헌활동지원(소외계층구독료지원 79사, 지역 신문활용교육지원(구독료 79사, 프로그램 15사 등)) 기금관리비 562 ·기금 관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 등 - 인건비 338(5명), 경상비 224
'24년	8,806 (사업비 8,251+ 기금관리비 555)	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지원 8,251 ·우선지원대상사(지역 일주간지) 68개 선정·지원 - 지역신문역량지원(기획취재지원 49사, 지역신문 제안사업 15사, 지역민참여보도 47사, 지역인재 인턴프로그램 41사 44명, 디지털취재장비임대지원 68사, 공동주제심층보도지원 7사 등) - 지역공헌활동지원(소외계층구독료지원 64사, 지역 신문활용교육지원(구독료 62사, 프로그램 18사 등)) 기금관리비 555 ·기금 관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 등 - 인건비 347(5명), 경상비 208
'25년	8,807 (사업비 8,251+ 기금관리비 556)	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지원 8,251 ·우선지원대상사(지역 일주간지) 67개 선정·지원 중 기금관리비 556 ·기금 관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 등 - 인건비 347(5명), 경상비 209

○ 기금관리비 세부 내역('25년 556백만원) *재단 법인회계 등에서 추가 집행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언론진흥재단 지역언론팀 운영 관련 제반 소요 비용

구 분	'25년 예산		
	합계	지역신문발전기금 기금관리비 예산	추가집행(법인회계, 사업비)
□ 합 계	693	556	137
○ 인건비	418	347	71
■ 보수	418	347(직원5명)	71(직원1명)/법인회계
○ 경상비	275	209	66
■ 사무국운영	46	회의, 업무협약, 공공요금 등	
■ 위원회운영	186	위원회 운영 102, 전문위원 자료조사 54	전문위원 자료조사 30/사업비
■ 고용부담금	43	7(직원1명)	36(직원5명)/법인회계

참고2

타부처 및 협회 등 의견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25.6.5)	• (사무국 설치 및 지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자문위원회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보조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 - 필요시 사무국의 설치 여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소관업무의 양이나 성질의 개별·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에 따른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할 필요
기획재정부 (25.6.12)	• (사무국 설치 및 지원) 현재 시행령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위탁)에 의거, 언론진흥재단에서 위원회를 보좌하고 있으며 기존 인력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점을 고려 시, 별도 사무국 설치의 불필요. 아울러 언론진흥기금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에도 별도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 사무국 신설 시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언론진흥재단 조직 이관 문제 등 발생 우려 • (정부의 기금 출연)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에 의거,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 전출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재정지원임. 따라서 별도 조항 신설을 통한 정부의 기금 출연 명시는 불필요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5.6.5)	• (사무국 설치 및 지원) 지역신문위의 업무를 지원하기 사무국을 설치한다면 지역신문위의 위상과 직무가 개선되어야 하며(지역신문법 제9조(위원회의 직무등) 개정) 문체부가 아니라 지역신문위에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함. 사무국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전제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 함께 논의 필요 • (정부의 기금 출연) 재원조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설 취지에 찬성. 다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보다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
한국언론진흥재단 (25.6.5)	• (사무국 설치 및 지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 사업과 연관성, 재단의 인적자원(지역언론팀+지역지사) 활용을 통한 효율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

참고3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개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제7조~제12조

- **(목적·성격)**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 행정기관위원회(자문위원회)
- **(구성)** 9명 이내, 문체부 장관 위촉 *임기3년, 명예직
 - * 국회 문체위 추천인사 3명,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 추천인사 각 1명, 지역신문에 10년 이상 재직·퇴직 3년 경과한 인사 2명 포함
 - ** '25.6월 현재 7기 위원회(8명) 구성(임기 '25.1~'25.12, 위원장(위원중 호선) 김찬영)
- **(직무)** 1.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2. 지역신문 발전 지원 주요시책 평가, 3.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4.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 심의, 5.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심의 및 실제조사,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 협력·조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사무지원기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관리 *시행령 제10 및 제17조 등
 - 지역언론팀 : 5명(팀장/팀원/계약직 : 1명/3명/1명)

〈지역신문발전기금〉 *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제13조~제16조

- **(목적)**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 *지역신문사 710개('25.5월 정기간행물등록시스템 기준)
- **(내용)** 편집자율권 등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 대상 기금 우선 지원('25년 67개)
 - * 선정기준 : 지역신문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우선지원 기준) 등
- **(재원)** 일반회계 및 타기금 전입금(영세한 업계 특성상 수입 징수 곤란)
 - * '05~'22년 일반회계 전입, '23년 일반회계 및 언론기금 전입, '24~'25년 언론기금 전입
- **(사업비 추이)** '05년 신설 시 205억원이었으나 '25년 83억원으로 감소 추세
 - * '05년 205억원 → '10년 107억원 → '15년 95억원 → '20년 87억원 → '25년 83억원
 - <최근 5년간 수입·지출 현황(단위:백만원)> * '24년말 기준 여유자금은 약 40억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수입	자체수입 (이자수입, 잔액 등)	160	160	160	165	487
	일반회계 전입금	8,700	8,300	2,500	-	-
	언론진흥기금 전입금	-	-	6,000	8,500	8,500
지출	사업비	8,699	8,264	8,251	8,251	8,251
	기금운영비	592	575	562	555	556

- **(주요사업)** 장비·인력 지원, 기획취재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취약계층 구독지원, 신문활용 교육 등